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1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한병도・위성곤・진선미

박정현 · 김한규 · 정태호

정준호 · 김영배 · 한정애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3%)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 3,119건, 82.7%)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 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2).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5(사법경찰관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① 사법경찰관이 제11조에 의한 현장출동이나 제12조에 의한 응급조치, 제13조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업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문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법무부렁으로 정한다.

제1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의하여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는 그 내용을 사법경찰관리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장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3(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소아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조회할수 있다.
 - ②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는 경 우에 준용한다.

제14조제2항 중 "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를 "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로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을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제11조제8항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보고서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위하여 그"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의하여 그"로, "직권 또는"을 "또는"으로, "청구에 따른 결 정으로"를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수시로"를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은"을 각각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0조의5(사법경찰관 직무활동
	에 대한 면책) ① 사법경찰관
	이 제11조에 의한 현장출동이
	나 제12조에 의한 응급조치, 제
	13조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업
	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
	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
	<u>지 아니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
	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u>정한다.</u>
제11조(현장출동) ① ~ ⑦ (생	제11조(현장출동) ① ~ ⑦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u>⑧ 제2항에 따라 아동 또는 아</u>
	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
	한 조사를 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결
	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u><신 설></u>	⑨ 제8항에 의하여 작성된 조
	사결과보고서는 그 내용을 사

제11조의2(조사)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법경찰관리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게 상호 송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 항에 따른 조사 시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동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소아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
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
신・심리・신체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만 한다.
-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 하는 관련 후보자 중에서 제1 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

-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생략)
 -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 수·<u>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u> <u>기관의</u>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 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 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생략)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12조제 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

_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수
_	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
-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현
	행과 같음)
(2
-	
-	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
-	관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
· -	치원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	
-	
-	
(③ (현행과 같음)
제]	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현행
	과 같음)
(2
-	
-	
-	
-	
-	
-	
-	

야 한다.

라 작성된 <u>긴급임시조치결정서</u>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지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 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u>직권 또는</u> 피해아 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u>청구에 따른 결정으로</u>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지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u>긴급임시조치결정서,</u>
제11조제8항에 따라 작성된 조
사결과보고서를
③ (현행과 같음)
세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위하여 제53조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의
하여 그또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u>.</u>
②·③ (현행과 같음)
세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월 1회
<u> </u>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u>법무부장관은</u> 중대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 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 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②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